

고향에 기부하고 혜택받는

고향사랑 기부제

고향사랑 기부제란

- 개인이 고향(지자체)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
-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,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
- 기부자는 고향을 돋는 자부심과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!!

시행시기

-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

기부자

- 기부자는 개인만 가능 * 법인·단체는 기부 불가

기부처

- 주민등록상 거주지(기초·광역)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

기부금액

-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

기부자와 지자체,
지역 생산자가
모두 행복한
고향사랑 기부금!

기부혜택(예정)

-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
→ 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공제(10만원원 초과 시 16.5%)
- 지역특산물 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
→ 답례품은 기부액의 30%, 최고 100만원 범위 내



무안군